

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

의안 번호	2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18.12.31자로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나. 협약기간 만료 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, 2년간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0.12.31.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,
- 지난 3년간 망우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은, 청소년관련 전문사업을 시행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온 법인으로
-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망우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의 범위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
- 개관일자 : 2006.01.20
- 시설규모 : 부지 7,710 m^2 , 건물 5,084 m^2 (지하 2층, 지상 3층)
- 지원시설 : 수영장, 체육관, 강당, 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 (2019.1.1 ~ 2020.12.31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,870백만원('18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1,031백만원, 물건비 617백만원, 경상이전 221백만원, 자본지출 167백만원, 사업비 1,562백만원, 사업외 지출 등 기타 272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【재계약 사유 보완 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견】

- 현 위탁법인은 청소년지도육성, 수련시설 및 야외활동, 사회교육 평생교육시설 운영, 사회체육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24년 설립된 법인으로
- 그동안,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, 청소년상담활동, 가출청소년쉼터 및 이동쉼터 운영 외 청소년 자치활동, 봉사활동, 캠프활동 등 청소년 운동과 함께 시민운동, 사회체육운동, 사회복지운동을 지속 추진해온 청소년운영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
- 특히, 망우청소년수련관 내 대안교육(위탁과정, 탈학교과정)을 시행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간관계 회복에 기여하며, 모범적인 대안교육을 시행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
- 아울러, 지역기관과의 업무협약(초·중·고 학교, 교육청, 사회복지기관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 시설)을 통하여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
- 2016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 '우수기관' 선정,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'최우수기관' 선정, 2017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에서 '우수기관'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시설운영과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최동수 (☎2133-4122)